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812
----------	-------

발의연월일 : 2025. 12. 31.

발 의 자 : 민형배 · 조계원 · 최혁진

김문수 · 김우영 · 양부남

안도걸 · 소병훈 · 정준호

이성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소속 대중문화예술인과 종사자를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할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최근 이른바 ‘주사 이모’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연예계의 특수한 업무 환경상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할 경우 연예인뿐만 아니라 매니저 등 종사자까지 불법 행위에 연루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점검해야 할 구체적인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 이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위법 사실에 대한 내부 신고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불법 행위가 확산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연예인과 종사자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

한 연예 활동 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한 대중문화산업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6조의2 및 제39조의2 신설 등).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관리자로서 의무 등) ① 누구든지 대중문화예술인, 임원·직원 및 관련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대중문화예술인등”이라 한다)에게 「의료법」 제27조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용하도록 알선 및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등에게 제1항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용·알선 및 강요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제2항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의 이용·알선 및 강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 신고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제2항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의 이용·알선 및 강요 사실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벌칙)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용하도록 알선 및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 본문 중 “제39조 또는”을 “제39조, 제39조의2 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6조의2(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u> <u>의 관리자로서 의무 등) ① 누</u> <u>구든지 대중문화예술인, 임원 ·</u> <u>직원 및 관련 종사자(이하 이</u> <u>조에서 “대중문화예술인등”이</u> <u>라 한다)에게 「의료법」 제27</u> <u>조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를</u> <u>이용하도록 알선 및 강요하여</u> <u>서는 아니 된다.</u> <u>②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u> <u>속 대중문화예술인등에게 제1</u> <u>항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가</u> <u>이용 · 알선 및 강요되고 있는</u> <u>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u> <u>다.</u> <u>③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제</u> <u>2항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의</u> <u>이용 · 알선 및 강요 사실을 확</u> <u>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u> <u>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u> <u>신고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u> <u>이 경우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u> <u>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u>

	<u>고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u>
	<u>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제2항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의 이용·알선 및 강요 사실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39조의2(벌칙)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용하도록 알선 및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u>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u>	제42조(양벌규정) ----- ----- ----- ----- <u>제39조, 제39조의2 또는</u> ----- ----- ----- ----- ----- -----

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